

서울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7나2077450(본소), 2017나2077467(반소) 판결
[공사대금 · 지체상금등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7나2077450(본소), 2017나2077467(반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4가합114771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정재하

원고보조참가인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C종교단체 D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용택

변론 종결2020. 5. 8.

판결 선고2020. 6. 10.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4가합114771(본소),
2015가합103150(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33,809,037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29,085,471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19,882,2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5,276,434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735,149,0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1 내지 4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부터 제5쪽에 있는 표를 아래의 표로 바꾼다.

- 공사명 : C종교단체 D교회 새성전 신축공사
- 공사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E 외 9필지 (3-2주구중심)
- 착공년월일 : 2012년 10월 29.일
- 준공년월일 : 2014년 4월 28.일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공사개요 : 연면적 - 11,136.33M²(3,368,74평)
구조 및 층수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4층/지상5층
- 계약금액 : 일금 구십일억원 정(₩9,10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7. 유보금 : 10% (준공 후 60일 이내) 잔금
- 8.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 9. 선금금 : 없음
- 10. 기성부분금: (1)개월에 1회 (제25조 참조)
- 11. 하자담보책임 : 계약금액의 3% (하자이행보증서 제출)
- 12. 하자책임기간 : 사용승인 후 24개월 단, 주요 장비류는 36개월
- 13.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
- 14. 기타사항 :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 없음
- 나. 대가지급 지연 시 이자율은 시중은행 대출 연체금리 적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 3. 공사감독관(CM사)이라 함은 피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사의 우선순위와 간섭공종의 조정, 원가, 공정 및 품질관리 업무 등 프로젝트 통합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0. 설계변경이라 함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설계가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 11. 준공이라 함은 허가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한 것을 뜻한다.

제8조(CM사/감독관)

- ① 피고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피고를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가. 시공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나. 계약 이행에 있어서 피고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다.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라.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여 확인하는 일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위임하는 일

제12조(업무보고 및 공사 관계자 협력)

① 원고는 공정보고, 기성 청구 등 공사수행과 관련된 각종 주요업무는 피고의 대리인인 제8조의 CM단장(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발생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실시 설계도서 인계 지연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부적합한 공사)

①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 또는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원고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피고는 사업계약의 변경 또는 설계도서 등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고에게 설계변경 지시서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만약 원고가 설계변경 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반조사서 및 흙막이 설계도에 기초 저면까지 풍화암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굴착공사 중 지반조사서와 상이하게 연암 등이 발견될 경우 이는 설계변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원고는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2조(기성부분금)

① 원고는 도급계약서에 정해진 기간 단위로 월말 기준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조서를 작성하고 익월 5일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피고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 피고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준공 검사)

- ① 원고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일정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축허가조건 이행여부, 각종 인허가 필증 취득, 준공도서 작성 등 허가관청의 사용승인을 위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피고의 입당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원고는 제1항의 사용승인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보완하여 다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원고는 사용승인과는 별도로 피고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지적사항은 시설물 인수인계 전까지 시정조치 완료하여야 한다.

제25조(대금 지급)

- ① 원고는 피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고는 제24조의 사용승인검사가 완료될 경우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2조(지질상태)

- ① 원고가 굴토공사 시 경암이 돌출하거나 유용 골재가 발견되는 등 실제 지질상태가 피고가 제공한 지반조사서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암판정이 필요한 경우 피고가 지정한 공인시험소의 검사결과에 의한다.
- 제7쪽 2행부터 4행까지의 '감정인 G의 감정결과(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감정인의 감정 결과'라 한다)'를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감정인'을 모두 '제1심 감정인 G'으로 고친다.
 - 제7쪽 12행부터 13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부합하고, 물량정산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은 764,277,488원이다. 따라서 총 공사대금은 이 사건

원도급공사계약에서 정한 9,100,000,000원과 이 사건 1차 변경공사계약으로 증액된 764,277,488원의 합계 9,864,277,488원인데 피고는 9,427,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437,277,488원(= 9,864,277,488원 - 9,42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

○ 제8쪽 8행의 '9,135,703,750원'을 '9,176,171,661원2) '으로, '291,296,250원'을 '250,828,339원'으로 고친다.

○ 제8쪽 12행의 '149,103,691원'을 '70,487,110원'으로, 13행의 '276,326,000원'을 '307,400,000원'으로, 14행의 '449,626,000원'을 '402,087,110원3) '으로 각 고친다.

○ 제8쪽 18행과 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위 1), 2)항의 청구금액을 제1심보다 감축하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이에 따라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 제9쪽 11행의 '㉓' 이하부터 17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㉓ 제1심 감정인 G도 위 변론기일에서 1차 설계도면 변경으로 감정할 부분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원고가 신청한 내용의 감정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감정인 L도 같은 취지로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㉔ 이 사건 1차 변경공사계약은 변경 사유에 대하여 '도면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공사조건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제2조)'이라 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부 추가 공사 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원도급공사계약의 기준이 된 설계도면 자체의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㉕ 원고는 이 사건 1차 변경공사계약 제3조에서 '본 합의서에서 변경 약정하지 아니한 원 계약서의 각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도급공사계약에서 정한 총액계약 관련 조항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준공일, 지체상금, 하자담보책임 등 위 1차 변경공사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이 사건 원도급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㉖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이후인 2014. 6. 2. 이후부터 수차례 기성정산처리를 위한 정산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협의를 시도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시공된 물량에 따라 공사금액을 변동하기로 하는 물량정산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 제11쪽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제1심 감정인 G이 실제 투입된 물량을 조사하지 않고 준공도면만을 기준으로 철골 물량을 461톤이라 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인 L도 철골 물량을 458.05톤으로 감정하여 제1심 감정과 비교하여 경미한 차이만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감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는 별지 1과 별지 4는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부분도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잘못 산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별지 1과 별지 4는 1차 변경 도면을 기준으로 위 도면에 시공할 것으로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감정을 진행하여 산출된 내역이고, 그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감에 대해서는 별지 2에서 별도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반영되었는바, 결국 피고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별지 2에서 일정 부분 반영되는 구조이고, 이러한 제1심 감정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1쪽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원도급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설계변경 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경우 피고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 원고는 총 23개 항목에 대한 추가공사 중 '홀, 주계단 마감재 설계변경(별지 2 순번 7)', '방음문 설계변경(별지 2 순번 8)'에 대하여만 피고의 설계변경 지시를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나머지 항목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제12쪽 5행의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 점'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은 원고는 공정보고, 기성청구 등 공사수행과 관련된 각종 주요업무를 피고의 대리인인 제8조의 CM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 점』

○ 제12쪽 9행의 '공사를 시행할 이유가 없고'를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공사를 시행할 이유가 없고(특히, 위 항목들 중 11, 13번 항목의 경우 공사대금이 총 1억 원

감액되는 공사인데, 원고가 피고 측의 지시 없이 위 공사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제16쪽 8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999,203원과 추가 공사대금 111,809,834원의 합계 133,809,0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8쪽 표 아래 6행의 '276,326,000원'을 '307,400,000원'으로 고치고, 제18쪽 7행부터 제19쪽 8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시공에 대하여 전체를 철거하고 재시공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실시한 구조검토 결과에서도 풍하중이 마감재에 작용할 경우나 저층부에서 손스침하중이 작용할 경우 앵글받침이 없는 부분의 함몰이 우려되기는 하나 구조해석상으로는 최대 함몰량이 0.88mm 정도로 적정한 치수가 산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하자가 중대한 안전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원도급공사계약은 제12항에서 하자책임기간을 "사용승인 후 24개월, 단 주요 장비류는 36개월"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지 6년여가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외벽 석재에서 함몰 등이 발생하였거나 피고가 이에 대해 보수 공사 등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제1심 감정인 G은 이 부분이 현재 보수가 불가능한 부분으로 연결핀 및 앵커 부족시공으로 사용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철거 후 재시공은 과다한 보수비가 소요된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이 법원의 감정인 L은 앵커, 고정핀 미시공 및 부설시공으로 반복하중 또는 지진 시 탈락 위험이 있어 외벽 80%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밝혔다.

한편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원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한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16519 판결 등 참조), 제1심 감정인 G은 원고와 피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석재 부분을 일부(68.52㎡, 전체 면적 대비 2.94%) 철거한 후

석재의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자를 감정하여 그 결과 사용상·미관상 문제가 없고 철거 후 재시공은 과다한 보수비가 소요된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위와 같은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6년이 경과하도록 외벽 석재 부분의 함몰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가 더 합리적이라고 볼 것이다.』

○ 제19쪽 16행의 '가2 계단측부 부실시공'을 '가15 계단측부 부실시공'으로 고친다.

○ 제21쪽 20행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를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47호증 내지 제5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로 고친다.

○ 제22쪽 3행부터 10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21,999,203원과 추가공사대금

111,809,834원의 합계 133,809,0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원공사도급계약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원고가 최후로 기성 공사를 요청한 2014. 6. 3.부터 7일이 경과한 2014. 6. 10.에서 10일 후의 다음 날인 2014. 6. 2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2항은 "피고는 제24조의 사용승인검사가 완료될 경우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도급계약서는 별도로 잔금 지급기한에 대해 정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제7항에서 피고가 잔금 10%를 준공 후 60일 이내에서 유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실시한 증거와 을 제5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 피고에게 4회에 걸쳐 공사비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내역서에 기재된 총 공사대금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확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건축위원회는 사용승인 이후에도 원고에게 여러 차례

하자 보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앞서 인정한 여러 하자가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133,809,037원을 준공 후 60일 이내에서 유보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2차 변경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일이 2014. 5. 20.인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8일 지연되어 2014. 5. 28.에야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용승인이 지연된 이상, 지연손해금은 실제 사용승인일이 아닌 계약상의 준공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4. 7. 20.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3,809,037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중 은행 대출 연체 금리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22쪽 13행의 "이 사건 판결"을 "이 사건 제1심판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별지 3의 제29쪽 '가' 항목의 인정 금액 '21,270,878원'을 '34,744,555원'으로, 제30쪽 '라' 항목의 인정 금액 '1,101,383원'을 '1,699,180원'으로 고친다4)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안승훈

판사구태회

별지

1)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1차 변경공사계약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7억 7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당심에서 갑 제25호증을 근거로 1차 변경공사계약에 따라 물량정산되어야 할 부분이 764,277,488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이는 청구를 감축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에 따라 별도의 서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2) 피고는 미시공부분 등을 반영한 총공사비에 대해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총공사비가 9,176,171,661원임을 전제로 반소 청구원인을 정리하였다.

3) 피고는 2020. 1. 8.자 준비서면(제24쪽)과 2020. 5. 8. 7차 변론기일에서 최종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1)~3)항 합계 707,675,449원이라 정리하였고, 위 금액에는 위 24,200,000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는 위 준비서면(제20~21쪽)에서 여전히 하자 감정을 위한 외벽석재 보수비 24,200,000원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으므로 위와 관련한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고 청구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4) 이는 단순한 계산상의 오류 및 오기일 뿐, 인정된 하자보수비 합계액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